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후 화물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차령 이상의 화물차를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차령의 기준과 행정처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후 화물자동차 차령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대통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화물차의 차령 및 구체적 처분기준을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차량충당 연한)”을“(화물자동차의 차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차령(車齡)”을 “차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齡) 13년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기간”을 “가중처분 적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 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에는 5년) 이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 제2호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 법 제19조제1항제○ 1차: 사업 일부정지(90일)

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4호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4호	180	180	-	-
--	---------------	-----	-----	---	---

별표 2 제2호차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4호	-	-	-	180
--	---------------	---	---	---	-----

별표 2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 자목 및 어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화물자동차 대수)

별표 3 제1호나목 중 “기간”을 “가중처분 적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목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의 경우에는 5년) 이
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기간”을 “가중처분 적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목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5호의 경우에는 5년) 이
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 제2호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 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 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 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 14호	○ 1차: 사업 일부정지(9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
호다목, 별표 2 비고 제1호, 별표 3 제1호나목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표의 제23호,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2 제2호어목 및 별표 4 제2호 표의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차량충당 연한) <신 설>	제13조(화물자동차의 차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齡) 13년을 말한다.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	② -----
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	-----
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	-----
동차는 <u>차령(車齡)</u> 3년 이내의	---- <u>차령</u> -----
차량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충당 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
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
에 따른다.	행령」 제3조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화물자동	
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022